[별지 제14호서식] 〈개정 2015.1.6.〉

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				처리기간 즉시
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)		

변경사항	변경전	변경후
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		
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		
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		
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		

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수수료
	1.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1. 사업자등록증[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(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)] 2. 건축물대장[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(일반/집합)]	없음

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 g/㎡(재활용품)]